

울산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15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영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10. 25.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68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1. 2. 접수 제9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4. 12.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2.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부부의 인연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서로 협의하였으며 이혼 후에 어떠한 민,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1. 울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2020. 2. 10.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1. 2. 접수 제911호로 2020. 1.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20. 7. 21. 피고를 상대로 울산가정법원 2020드단24397호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2020. 11. 27. 같은 법원 2020드단27884호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2.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0. 8. 19.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531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4건의 부동산(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22. 5. 11. 원고가 피고에게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을 조건 또는 부담으로 하여 이루어진 정지조건부 증여계약 또는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없거나 피고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2020. 9.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¹⁾.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형식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차용금 148,479,273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협의이혼을 부담 또는 정지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이혼을 하며 . . . (중략) . . . 부부의 인연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서로 협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구만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각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에 속하는 것으로서²⁾ 위 각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부담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부담’의 의미는 위 증여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조건 즉,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부담’이 ‘협의이혼’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협의이혼’이 증여의 정지조건이라면, 원고가 아직 협의이혼이 효력을 발생하기도 전에[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숙려기간을 거쳐 심사숙고할 시간을 부여하고, 숙려기간에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하며, 숙려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제1항).]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4) ① 피고는 2015. 5. 6.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를 1억 8,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25.까지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2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 ②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소재 건물 1층을 F에 임대해주고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8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에게 차량구입비,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 위 2억 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주황, 판사 정의철 병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124.37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울산광역시 울주군

대 34255㎡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1.소유권

34255분의 66.7463

1)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임을 전제로 ‘조건이 불성취’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원고의 2020. 8. 31.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